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	-------------------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내용변경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일

가 입 자		주 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자 택	
					회 사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가입자 종별부호	변 경 내 용			
			일 자	부 호	변 경 전	변 경 후
	-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접 수 인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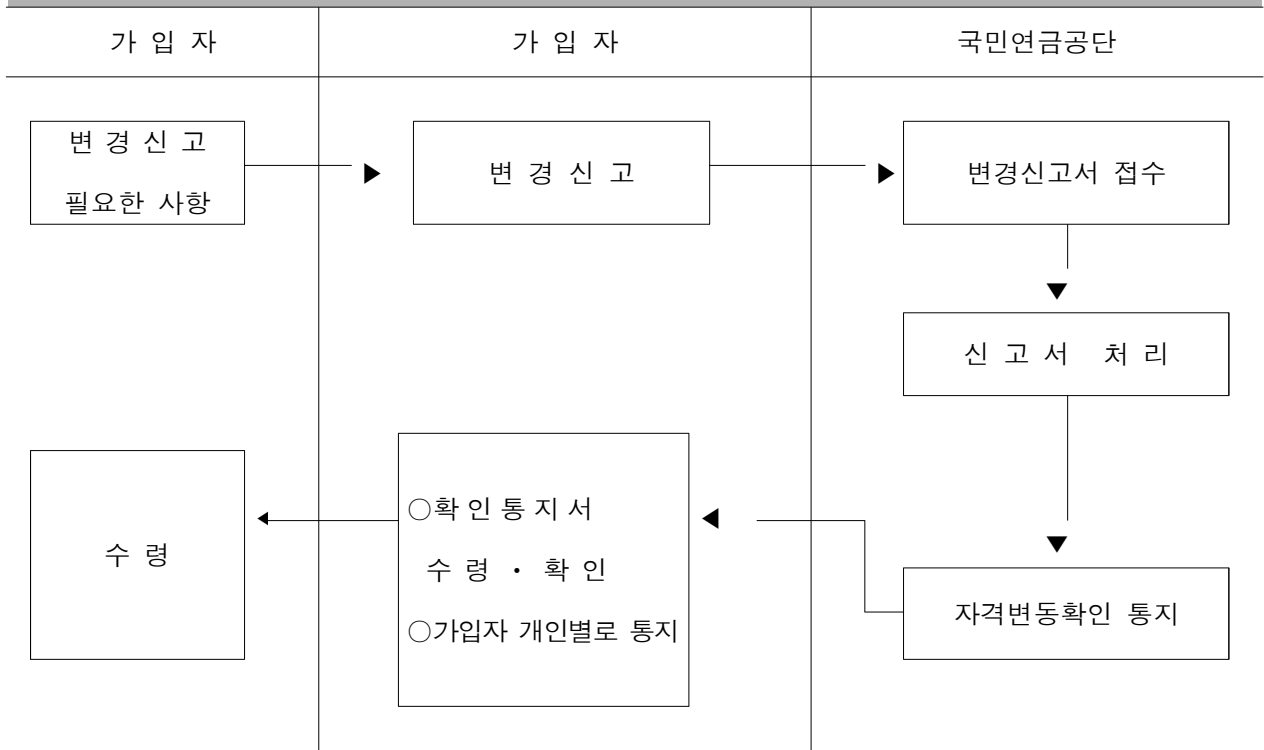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여부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여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변경)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7.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